

3단비교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법률 제21314호, 2026. 1. 27., 일부개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연관된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사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감면"이란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0. 12. 30., 2021. 12. 21., 2024. 12.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과세·세액면제·세액감면·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2.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 세율의 적용 또는 같은 법 제89조제1항 및 제89조의3에 따른 이자소득·배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3.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② 이 법에서 "본세"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2001. 12. 29., 2005. 1. 5., 2007. 12. 31., 2010. 3. 31., 2010. 12.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감면을 받는 해당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2.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소득세 3. 삭제<2010. 12. 30.> 4.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5.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6.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취득세 7.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레저세 8. 제5조제1항제8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대한 정의는 본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0. 12. 30.> <p>[제목개정 2010. 12. 30.]</p>		

<p>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개정 1994. 12. 22., 1998. 12. 28., 1999. 12. 3., 2001. 12. 29., 2005. 1. 5., 2007. 12. 31., 2010. 1. 1., 2010. 3. 31., 2010. 12. 30., 2021. 12. 21.></p> <p>1.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p> <p>2. 삭제<2010. 12. 30.></p> <p>3.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물품 중 같은 항 제1호가목·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1)·2)의 물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p> <p>4.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에 규정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p> <p>5.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p> <p>6.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p> <p>[제목개정 2010. 12. 30.]</p>		
--	--	--

<p>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 12. 22., 1995. 12. 29., 1996. 10. 2., 1997. 8. 30., 1997. 12. 13., 1998. 2. 24., 1998. 9. 16., 1998. 12. 28., 1999. 2. 5., 1999. 12. 28., 2000. 10. 21., 2000. 12. 29., 2004. 7. 26., 2009. 3. 18., 2009. 4. 1., 2010. 3. 31., 2010. 12. 30., 2011. 12. 31., 2014. 1. 1., 2014. 5. 14., 2014. 12. 31., 2015. 6. 22., 2015. 12. 15., 2016. 12. 20., 2018. 12. 31., 2019. 12. 31., 2021. 12. 21., 2022. 12. 31., 2023. 12. 31., 2024. 12. 31., 2026. 1. 27.>></p> <p>1. 국가(외국정부를 포함한다)·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감면</p> <p>2. 농어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과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의 어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어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p> <p>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특별세액감면</p> <p>3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p> <p>3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소득공제에 따른 감면</p> <p>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86조의4·제87조·제87조의2·제87조의5·제88조의2·제88조의4·제88조의5·제91조의14, 제91조의16부터 제91조의22까지 및 제91조의25에 따른 저축이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p> <p>4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p> <p>4의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제3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감면</p> <p>5.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감면 중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감면</p> <p>6. 국제협약·국제관례 등에 따른 관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p> <p>7. 「증권거래세법」 제6조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신설 2022. 2. 15.></p> <p>7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p> <p>8.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또는 등록, 임시건축물의 취득,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 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p> <p>8의2. 삭제<2014. 12. 31.></p> <p>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p> <p>1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p>	<p>제4조(비과세) ① 법 제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개정 1994. 12. 23., 1994. 12. 31., 1995. 12. 30., 1997. 10. 1., 1997. 12. 31., 1998. 12. 31., 1999. 12. 31., 2000. 12. 29., 2001. 12. 31., 2002. 12. 30., 2003. 12. 30., 2005. 12. 31., 2008. 2. 29., 2010. 9. 20., 2010. 12. 30., 2013. 3. 23., 2014. 11. 19., 2015. 2. 27., 2016. 2. 5., 2017. 7. 26., 2019. 2. 12., 2025. 2. 28., 2025. 12. 30.></p> <p>1.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제72조제1항(제1호, 제5호 및 제8호의 법인은 제외한다), 제77조[「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 이상 경작할 것의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한정한다] 및 제102조, 제104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3제1항제2호(「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양수한 재산으로 한정한다)·제3호(「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양수한 재산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조합이 양수한 재산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감면</p> <p>2. 「관세법」 제93조제1호에 따른 감면</p> <p>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4조의3에 따른 감면</p> <p>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감면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p> <p>(2) 법 제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관세법」 제88조, 제92조, 제93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4호까지, 제94조,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을 말한다.<개정 2010. 12. 30.></p> <p>(3) 법 제4조제7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신설 2022. 2. 15.></p> <p>(4) 법 제4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제57조의2제2항·제6항, 제66조제1항·제2항, 제68조제1항·제3항(「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로 한정한다), 제73조제3항, 제74조제4항·제5항, 제92조, 「지방세법」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26조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감면을 말한다.<개정 2010. 12. 30., 2012. 2. 2., 2015. 2. 27., 2016. 12. 1., 2019. 2. 12., 2020. 1. 15., 2022. 2. 15.></p> <p>(5) 법 제4조제9호 및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의 주거 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p>
---	--

1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
 10의2.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10의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감면
 10의4.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10의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취득세
 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11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제100조·제140조 및 제141조에 따른 감면
 11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4에 따른 감면
 11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4에 따른 감면
 12. 기술 및 인력개발, 저소득자의 재산형성, 공익사업 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목개정 2010. 12. 30.]

해당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공급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주택바닥면적(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에 다음 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개정

2012. 2. 2., 2016. 8. 11., 2022. 2. 15. >

구분	용도지역	적용배율
도시지역	1. 전용주거지역	5 배
	2. 상업지역 · 준주거지역	3 배
	3. 일반주거지역 · 공업지역	4 배
	4. 녹지지역	7 배
	5. 미계획지역	4 배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7 배

⑥ 법 제4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주택"이란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영농을 위하여 소유하는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그 와 연접한 시·군·구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따른 고가주택을 제외 한다.<개정 2000. 12. 29., 2005. 12. 31., 2010. 12. 30., 2015. 2. 27., 2022. 2.

15.>

⑦ 법 제4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감면을 말한다.<개정 1994. 12. 23., 1994. 12. 31., 1995. 12. 30., 1997. 8. 30., 1997. 10. 1., 1997. 12. 31., 1998. 12. 31., 1999. 10. 30., 1999. 12. 31., 2000. 10. 21., 2000. 12. 29., 2001. 8. 14., 2001. 12. 31., 2002. 4. 20., 2002. 12. 30., 2004. 12. 31., 2005. 1. 5., 2005. 12. 31., 2006. 2. 9., 2008. 2. 29., 2009. 2. 4., 2009. 4. 21., 2009. 6. 9., 2009. 12. 15., 2010. 2. 18., 2010. 6. 8., 2010. 7. 9., 2010. 9. 20., 2010. 12. 30., 2011. 7. 14., 2012. 2. 2., 2012. 5. 22., 2013. 3. 23., 2013. 10. 22., 2014. 2. 21., 2014. 11. 19., 2015. 2. 27., 2015. 12. 31., 2016. 2. 5., 2016. 12. 1., 2016. 12. 30., 2017. 6. 27., 2017. 7. 26., 2018. 2. 27., 2018. 12. 31., 2019. 2. 12., 2020. 1. 15., 2020. 2. 11., 2020. 4. 14., 2021. 2. 17., 2022. 2. 15., 2022. 2. 17., 2023. 2. 28., 2023. 3. 14., 2024. 2. 29., 2025. 2. 28., 2025. 12. 30.>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제2항, 제29조의6, 제30조, 제30조의3, 제33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76조제1항, 제92조, 제95조의2, 제98조의3, 제98조의5, 제99조의9, 제99조의11, 제104조의8제1항·제3항, 제104조의21, 제104조의24, 제104조의28, 제104조의31, 제118조의2, 제121조의2부터 제121조의4까지, 제121조의13, 제126조의2, 제

<p>4까지, 제121조의13, 제126조의2, 제126조의6 및 제126조의7제9항에 따른 감면 1의2.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철도공사가 현물출자 받은 국유재산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 1의3. 삭제<2014. 12. 30.> 1의4.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대한 「지방세특별법」 제57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감면 1의5. 삭제<2014. 12. 30.> 1의6.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 또는 제161조의10에 따라 설립되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또는 농협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지방세특별법」 제57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감면 1의7.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경제사업을 현물출자로 이관받은 경우에 대한 「지방세특별법」 제57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감면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라 종전부동산을 매입한 경우에 대한 「지방세특별법」 제13조제2항제5호 및 제57조의3제2항에 따른 취득세의 면제 3.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에 따른 조합등에 탁금의 이자소득의 소득세에 대한 감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감면 가.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민 나.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임업인. 다만, 5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소유한 사람은 제외한다. 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자 4. 「관세법」 제9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91조, 제93조제2호 · 제3호 및 제15호에 따른 감면 5. 「지방세법」 제9조제2항, 「지방세특별법」 제13조제2항제1호의2,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7조의2,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 제4항 · 제7항 · 제8항, 제22조의2제1항 · 제2항, 제22조의3, 제23조, 제28조제1항,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1조제1항 · 제2항, 제31조의3제1항 · 제2항, 제31조의4, 제33조제1항 · 제2항, 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제1항, 제40조, 제40조의3, 제41조제1항 · 제5항 · 제7항, 제42조제2항 · 제3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44조의2, 제4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46조, 제50조제1항, 제52조제1항 · 제2항, 제53조, 제54조제5항, 제57조의2제1항(「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합병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57조의2제3항제2호, 같은 조 제9항, 제58조의2,</p>	
---	--

<p>3항제2호, 같은 조 제9항, 제58조의2, 제60조제4항, 제63조, 제64조제1항, 제66조제3항 · 제4항, 제67조제1항 · 제2항, 제72조제1항, 제73조제1항, 제73조의2, 제74조제3항, 제74조의2제1항, 제76조제1항, 제79조, 제80조, 제81조제1항 · 제2항, 제83조제1항 · 제2항, 제85조제1항, 제85조의2, 제88조, 제89조 및 제90조제1항에 따른 감면 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중 제1호부터 제5호 까지와 유사한 감면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 ⑧ 법 또는 이 영에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규정과 같은 취지의 감면을 규정한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의 해당 규정에 대하여 동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동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98. 12. 31., 2005. 12. 31., 2022. 2. 15. ></p>
--

<p>제7조(신고·납부 등) ① 제5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해당 본세를 신고·납부(중간예납은 제외한다)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본세의 신고·납부의 예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 12. 30.></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조제9호에 따른 연결모법인이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신설 2011. 12. 31., 2018. 12. 24.></p> <p>③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받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의 원천징수의 예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30.></p> <p>④ 제5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해당 본세를 신고·납부하거나 거래징수(증권거래세법) 제9조에 따른 거래징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30.></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 12. 30., 2011. 12. 31.></p> <p>[제목개정 2010. 12. 30.]</p>	<p>제6조(신고·납부등)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 특별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당해 본세의 신고·납부서에 당해 본세의 세액과 농어촌특별세의 세액 및 그 합계액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p> <p>② 농어촌특별세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및 추가자진납부를 하는 경우 수정신고의 기한·납부방법, 가산세 경감 등은 당해 본세의 예에 의한다.<개정 2005. 12. 31.></p>	
<p>제8조(부과·징수) ① 삭제<2005. 1. 5.></p> <p>② 제7조에 따라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 및 원천징수 등을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0. 12. 30.></p> <p>1.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을 받는 자와 제3조제3호·제4호·제6호의 납세의무자(같은 조 제3호의 납세의무자 중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이 해당 본세의 결정·경정 및 징수의 예에 따라 결정·경정 및 징수한다.</p> <p>2.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 중 관세의 감면을 받는 자와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 중 물품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관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한다.</p> <p>3.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 중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와 제3조제5호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해당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한다.</p> <p>[제목개정 2010. 12. 30.]</p>	<p>제7조(부과·징수)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본세의 납세고지서에 당해 세액과 농어촌특별세액 및 그 합계액을 각각 기재하여 고지하여야 한다.</p> <p>②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 또는 세무서장은 농어촌특별세만을 고지하는 경우에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을 표시하여 고지하여야 한다.</p>	

<p>제9조(분납) ① 제3조 각 호의 납세의 무자가 본세를 해당 세법에 따라 분납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도 그 분납금액의 비율에 의하여 해당 본세의 분납의 예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 ② 본세가 해당 세법에 따른 분납기준금액에 미달하여 그 본세를 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의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0. 12. 30.]</p>	<p>제8조(분납)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분납은 당해 본세의 분납기간이내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어촌특별세의 세액이 1천만원이 하인 때에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농어촌특별세의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p>제9조의2(납부유예) 제3조 각 호의 납세의무자가 본세를 해당 세법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도 해당 본세의 납부유예의 예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다.</p>		
<p>제10조(국고납입) 시장·군수가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p>		
<p>제11조(불복)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의 예에 따른다.</p>		
<p>제12조(환급) 농어촌특별세의 과오납금 등(감면을 받은 세액을 추징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을 포함한다)에 대한 환급은 본세의 환급의 예에 따른다.</p>	<p>제11조(환급) ① 시장·군수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시·군의 수입금총액에서 환급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총당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의 수입금에서 농어촌특별세의 환급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총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군금고가 수납한 농어촌특별세총 환급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납입하지 아니하고 시·군금고의 수입금이 되도록 조치한다. 이 경우 시·군 공무원이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한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시·군금고에 납입할 수 있다.</p>	
<p>제13조(필요경비 또는 손금불산입)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